



인 권 침 해 구 제 매 뉴 얼

재단법인 **평택시문화재단**

I 추진배경

- ☐ 인권침해 발생을 예방하고 인권침해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피해자를 보호하고 구제하기 위한 절차 마련

II 구제절차 개요

☐ 인권침해 구제 기구

○ 인권경영 전담부서 지정

- 인권경영 업무총괄(인권경영책임관) : 경영지원팀장
- 담당부서 및 담당자 : 경영지원팀 경영기획담당자

○ 인권침해 구제위원회(인권경영위원회) : 인사위원회에서 수행

※운영내규 제15조(인권경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 인권침해 상담 신고 센터 운영

○ 직원 및 이해관계자 피해 시 구제를 위한 외부신고시스템 설치·운영 (※ 재단 홈페이지 내 클린신고센터)

○ 주관부서 : 평택시문화재단 경영지원팀

○ 처리절차 : 인권경영책임관에게 이메일, 우편, 전화, Fax 등으로 신고

○ 기타사항 : 무기명의 신고는 원칙상 접수처리 하지 않음

단, 기명의 신고방법으로는 본인에게 불이익의 개연성이 있거나 신고 내용이 사실로서 진정성이 높다고 인권경영책임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접수처리 가능

□ 구제절차 흐름도

단 계	내 용	주 체
신 고	· 인권침해신고서를 작성하여 인권경영담당부서에 신고 ※별지 제1호 서식(인권침해 신고서) · 방문접수 외에도 전화 및 팩스, 이메일, 재단 홈페이지 내 클린 신고센터를 통해 온라인 신고 가능	재단 직원 및 이해관계자
↓		
신고접수 및 조사	· 담당자는 인권침해신고서를 접수하여 인권경영책임관에게 보고 ※인권침해사항 인권침해 접수대장에 기재 · 인권경영책임관은 인권침해 여부 상담 ※신고내용이 인권침해와 관련 없을 경우 등 각하	인권경영 담당부서
↓		
보고	대표이사에게 사고사실 보고	인권경영 책임관
↓		
당사자 합의	사건종결	인권경영 담당부서
↓		
인권침해구제 위원회 소집	인권경영(침해구제)위원회 소집	인권경영 담당부서
↓		
조사	· 당사자 서면 출석 요구 등으로 조사를 수행 , ※신고내용 비밀보장 및 신고 불이익 방지 · - 당사자는 14일 이내에 진술서를 제출	인권경영 위원회
↓		
심의 의결 및 통보	· 위원회는 상정된 사건에 대하여는 접수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심의 하여야 함 ※단, 부득이한 경우에는 2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음 · 인권침해 여부를 결정한 경우 위원장은 즉시 그 내용을 신고인에게 서면으로 통보 ※별지 제2호 서식(인권침해 접수 및 처리대장)	인권경영 위원회
↓		
시정 및 조치	· 시정명령에 따라 조치 · 재발방지 교육 등	인권경영 담당부서

Ⅲ 인권침해 가이드라인

☐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 침해행위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 관련)

-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구금 보호시설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헌법 제20조 내지 제22조에 보장된 인권을 침해당하거나 차별행위를 당한 경우
 - 제10조 생명권 행복추구권
 - 제11조 평등권
 - 제12조 신체의 자유, 적법절차 원칙
 - 제13조 신체의 자유
 - 제16조 주거의 자유
 - 제17조 사생활 비밀의 자유
 - 제18조 통신의 비밀과 자유
 - 제19조 양심의 자유
 - 제20조 종교의 자유
 - 제21조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 제22조 학문과 예술의 자유

☐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4호 관련)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출생지, 원적지, 본적지, 성년이 되기 전의 주된 거주지역 등), 출신국가, 출신민족, 용모 등 신체조건, 기혼·미혼·별거·이혼·사별·재혼·사실혼 등 혼인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형태 또는 가족상황, 인종,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 성적 지향, 학력, 병력 등 합리적 이유 없이 고용관계, 재화·용역·교통수단·상업시설·토지·주거시설의 공급이나 이용 또는 교육시설이나 직업훈련기관에서의 교육 훈련이나 그 배움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 배제 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성희롱행위

☐ 재단 인권경영 운영 내규 제2장 인권경영 이행사항에 보장된 인권을 침해당하거나 차별행위를 당한 경우

IV 인권침해 시 조치사항

□ 담당부서 조치사항

조치사항	내 용
전문적 상담 권유 및 사건보고	- 피해자의 상황을 충분히 공감하고 경청 - 행위자에게 비난하는 등 공격적인 태도나 가해자로 낙인찍는 태도 금물 - 공정하고 객관적인 태도 유지 - 행위자의 행동을 피해자의 입장에서 생각하도록 조력 - 피해자에 대한 소문유포, 비난, 위협, 자체적 문제 해결을 위해 피해자가 원치 않는 만남요청, 연락 등은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한 행동이므로 절대로 해서는 안된다는 점을 확실히 고지
피해자 보호조치 실시	2차 피해 예방 및 진행사항 주시
철저한 비밀유지	상담 및 사건에 대한 철저한 비밀유지

□ 피해자 조치사항

조치사항	내 용
인권침해 사건발생부터 순서대로 자료정리	메시지 이메일 녹취 증인확보 등
공식절차를 진행할 의사가 있는 경우 신속하게 인권 경영책임관과 상담	상담 자체는 행위자에 대한 조사나 징계를 진행하지 않으므로, 자연스런 소통과정이라 생각하고 부담 없이 상담 요청

□ 행위자 조치사항

조치사항	내 용
즉시 진심어린 사과	인권침해 의도가 없었더라도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상대방이 모욕감 등을 느꼈다면 이를 받아들이고 즉시 사과
피해자의 요구사항에 대한 즉각적 이행	성실하게 조정 내용을 수용하고 피해자의 요구사항을 이행
성실한 조사 협조 및 합당한 징계 결정 시 수용	징계 결정 시 자신의 행동의 정도와 지속성에 비추어 징계가 확인하고 이를 수용
사건 은폐·왜곡 등 2차 가해 시도 중단	피해자에 대한 근거 없는 비난 등으로 2차 가해를 가하지 않도록 주의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는 추가 징계대상